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거나 그 지정·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의료기관 등 추가(안 제46조제2항)

나. 사고 발생 위험자(중상사고, 행정처분 등)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만 수검(안 제49조제5항)

다. 의료기관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취소(안 제4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
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ksb3033@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